

일반 공급 서류 안내

서류		발급기준	세부사항	
필수 사항	신분증 / 인감도장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재외동포: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주택공급신청(계약)용, (본인 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제3차 대리불가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청약자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생략)	
추가 사항	복무 확인서	본인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기타지역(수도권)으로 당첨된 경우군복무기간(10년 이상)명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만 30세 미만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전체 포함으로 발급)	
	전세 피해자 확인 서류	본인 또는 세대원	전세피해자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 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받아 소유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 받기 위한 경우	
	단신부임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본인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파견 및 출장명령서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 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는 인정 불가 ※ 해외에서 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 첨부 필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있거나,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청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당첨사실확인서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주기간 확인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해외체류(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 존속	만 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출입국 사실증명서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단,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대리인	위임장	본인	- 접수 장소 비치(신청자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	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 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 (서명 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 증명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대리인 인장	대리인	서명 가능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상기 내용에 오류가 있을 시 입주자모집공고가 우선 합니다